

석면환경센터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(제47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- 다.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.
- 1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 - 2)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
 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·정도·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행정처분 기준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
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	법 제34조 제1항제1호	지정 취소		
나.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	법 제34조 제1항제2호			
1) 지정 요건의 전문인력이 부족한 경우		업무정지 1개월	업무정지 3개월	업무정지 6개월
2) 지정 요건의 전문인력이 전혀 없는 경우		지정 취소		

3)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 가 부족한 경우		업무정지 1개월	업무정지 3개월	업무정지 6개월
4)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 가 전혀 없는 경우		지정 취소		
다. 영 제45조에 따른 평가 결 과 사업 실적이 매우 부진한 경우	법 제34조 제1항제3호	업무정지 1개월	업무정지 2개월	업무정지 3개월